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80,000,000	44,400,000
일반회계	1,120,000,000	33,600,000
특별회계	360,000,000	10,800,000
공기업특별회계	238,900,000	7,167,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6,400,000	2,892,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900,000	2,877,000
공영개발특별회계	46,600,000	1,398,000
기타특별회계	121,100,000	3,633,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90,000	104,700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8,500,000	2,055,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00,000	30,0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2,143,000	364,290
주택사업특별회계	432,000	12,96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242,000	997,260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293,000	68,7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15,05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①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② 지방채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폐로 인하여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예산 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